

#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신규임용 심사지침

제정: 2014. 12. 12.

개정: 2016. 12. 02.

개정: 2017. 12. 11.

개정: 2018. 12. 04.

개정: 2020. 05. 28.

전부개정: 2021. 07. 26.

일부개정 2024. 05. 30.

## I 목적

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,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」,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」 등에 근거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채용을 위한 세부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II 적용범위

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공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## III 자격

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신규임용 자격은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」,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 제6조」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### 1. 공통 자격

- 가.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」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

- 나.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 제6조」에 따라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- 다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- 라.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그 임기가 정년(65세) 이내인 자

2. 채용 분야별 자격

- 가. 국책사업 유치 및 산학협력연계강화, 진로심리상담 및 취·창업지도 분야 : 담당할 채용분야와 관련된 직무로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, 대학에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
- 나. 교육·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 분야 : 채용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, 대학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

3. 다음 각 호의 특정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 별도로 5년 경력을 인정

- 가.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
- 나. 관련법에 따른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
- 다. 박사학위 소지자. 다만, 교육·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 분야는 인정하지 아니함

**IV 신규임용 방법 및 임용 시기**

- 1. 신규임용 방법: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임용시기: 매학기 초(3월1일, 9월1일)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대학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달리 할 수 있다.

1. 공고 : 15일 이상
2. 서류접수 : 방문 및 우편 접수
3. 서류심사
  - 가. 주관: 서류심사위원회
  - 나. 내용: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자격 및 구비서류 심사
  - 다. 결과 활용: 서류심사 통과된 자에 한하여 경력심사 진행함
4. 경력심사 : 총 100점
  - 가. 주관: 경력심사위원회
  - 나. 내용: 지원자의 학력, 경력, 산학협력실적, 연구실적과 자기기술서에 의한 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, 활동계획을 심사
  - 다. 결과 활용: 경력심사 I, II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, 임용예정 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5배수를,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
5. 면접심사 : 총 100점
  - 가. 주관: 면접심사위원회
  - 나. 내용: 인성 및 교수로서의 자질, 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, 채용분야 활동계획 심사
  - 다. 결과 활용: 면접심사 최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을 임용후보자로 선정
6. 임용후보자 결정 통지
7. 임용준비 : 신원조회, 전력조회, 신체검사, 호봉 및 직급 산정 등
8. 대학인사위원회 동의
9. 임용 : 임용장 수여, 선서

## VI 심사 내용

1. 심사의 구분별,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가. 서류심사

- 1) 지원자의 교수자격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한 후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.
- 2) 심사시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판단하되, 필요한 경우 경력심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다.

나. 경력심사 I, II

- 1) 채용 분야별 심사기준표에 따라 지원자의 학력, 경력, 산학협력실적,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.
- 2)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.

구분(분야)		국책사업 유치 및 산학협력연계강화 / 진로심리상담 및 취·창업지도	교육·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
경력심사 I	학력	10	-
	경력	20 (직위 10, 기간 10)	10 (직위 5, 기간 5)
	산학협력실적	20	30 (컨설팅 20, 사업유치 10)
	연구실적	10	10
경력심사 II	자기기술서	-	-
	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	20 A(20), B(15), C(10), D(5)	25 A(25), B(20), C(15), D(10)
	채용분야 활동계획	20 A(20), B(15), C(10), D(5)	25 A(25), B(20), C(15), D(10)
합계		100	

- 3) 해당 직위(직급)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, 근무연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위직급의 경력을 인정하며, 가장 유리한 직위(직급) 1개만 인정
- 4) 경력심사 I의 경우, 교무과에서 1차 평정 후 경력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며, 경력심사위원회는 교무과의 1차 평정을 참조하여 자유재량에 따라 평정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.
- 5)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**최근 5년간(20. 5. 1. ~ 25. 4. 30.)** 실적만 인정한다.

다. 면접심사

- 1)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하여 지원자의 인성 및 교수로서의 자질, 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 및 채용분야 활동계획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다.
- 2) 심사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인성 및 교수로서의 자질	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	채용분야 활동계획	합계
점수	30	30	40	100
등급별 점수	A(30), B(22), C(14), D(6)		A(40), B(30), C(20), D(10)	

2. 단계별 심사 정족수 및 점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한다.

- 가.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나. 경력심사 I의 평가점수는 전체 경력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를 평균한다.
- 다. 경력심사 II는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를 평균한다. 다만, 전체 경력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- 라. 면접심사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한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하고, 면접심사는 전체 면접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를 “가”로 판정한다.

## VII 심사위원회 구성

### 1. 서류심사위원회

: 서류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무과장, 인사팀장, 인사담당자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### 2. 경력심사위원회

: 경력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장, 교외위원 2인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### 3. 면접심사위원회

: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, 교학부총장, 원주캠퍼스부총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## VIII 임용예정 후보자 결정

총장은 면접심사 최고득점자를 임용예정후보자로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.

## IX 임용예정 직급결정

직 급	산업체경력	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경력	비 고
부 교수	20년 이상	7년 이상	
조 교수	10년 이상	-	

## X 임용준비

1. 임용서류구비(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반서류)
2. 대학인사위원회 동의
3. 전임교원 임용계약 체결

## XI 임용

신규로 임용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구 분	조 교 수	부교수
계약기간	2+1년	2+1년

\* 단, 임용 후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'1년'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며, 이후 실적평가를 통해 2년 단위 재임용 가능

[별표1-1] 공채심사기준 총괄표(국책사업 유치 및 산학협력연계강화, 진로심리상담 및 취·창업지도 분야)

[별표1-2] 공채심사기준 총괄표(교육·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 분야)

[별표2] 제출서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[별표3] 공공법인(예시)

<별지 제1호 서식> 자기소개서

<별지 제2호 서식> 채용분야 주요 추진실적

<별지 제2호 서식> 채용분야 활동계획

##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공채심사기준 총괄표

- 국책사업 유치 및 산학협력연계강화, 진로심리상담 및 취·창업지도 분야 -

구분	평가영역 (총배점)	평가지표	배점	비고		
경력 심사 I	1. 학력 【10】	• 박사학위	10			
		• 석사학위	5			
		• 학사학위	1			
	2. 경력 【20】	직위 (직급) 【10】	• 임원이상 • 고위공무원급 • 책임연구원 7년차 이상		대기업(공공법인) 10 중기업 8 소기업 6	
			• 부장급 • 서기관급 • 책임연구원		대기업(공공법인) 8 중기업 6 소기업 4	
			• 차장급 • 사무관급 • 선임연구원		대기업(공공법인) 6 중기업 4 소기업 2	
			근무 기간 【10】		• 31년 이상	10
					• 26~30년	8
					• 21~25년	6
		3. 산학협력실적 【20】	• 특허		20	
			- 국제특허(건당 6점) - 국내특허(건당 3점)			
			• 산학협력 관련 포상			
	- 국가기관 포상(건당 5점) - 광역단체 및 지자체 포상(건당 3점)					
	• 국가(공공)기관의 산학협력 관련 위원회활동					
	- 국제기구 및 기관활동(건당 2점) - 국가단위 정부기관위원회 (건당 1점) - 도단위 정부기관위원회(건당 0.5점) - 시, 군 단위 정부기관위원회(건당 0.3점)					
4. 연구실적 【10】	• 논문	10				
	- 국제전문학술지(편당 6점) - 국내전문학술지(편당 3점) - 국외전문학술지(편당 2점)					
	• 저서					
		- 전문학술저서(편당 4점) - 일반전공저서(편당 3점)				
<b>계</b>		<b>60점</b>				
경력 심사 II	5. 자기기술서 【40】	자기소개서	• 지원자의 성격, 장·단점, 특기, 본교지원동기, 주요 업무 경험등 본인에 대한 소개내용을 상세하게 기록	면접시 활용		
		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	• 프로젝트수행경력 등 산학협력 주요 추진실적	20		
		채용분야 활동계획서	• 학·연·산·관 협력방안 등 산학협력 활동 계획	20		
	<b>계</b>		<b>40점</b>			
<b>소계</b>		<b>100점</b>				
면접 심사	6. 면접 【100】	• 교수로서의 자질 등 (교수로서의 자질, 인성 적합여부 평가)	30	100		
		• 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 (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로서 적합여부 평가)	30			
		• 채용분야 활동계획 (임용 후 활동에 대한 비전과 소신 등 평가)	40			
<b>소계</b>		<b>100점</b>				
<b>합계</b>		<b>200점</b>				

##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 공채심사기준 총괄표

### - 교육·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성과평가 분야 -

구분	평가영역 (총배점)	평가지표	배점	비고	
경력 심사 I	1. 경력 【10】	직위 (직급) 【5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임원이상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고위공무원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책임연구원 7년차 이상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교수·부교수</li> </ul>	5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부장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서기관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책임연구원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조교수 5년차 이상</li> </ul>	3	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차장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사무관급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선임연구원</li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조교수, 비전임교원(상근)</li> </ul>	1	
	근무 기간 【5】	• 21년 이상	5		
		• 16~20년	4		
		• 11~15년	3		
		• 10년	2		
	2. 산학협력실적 【30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육 개선 진단 컨설팅 및 교육과정 개발(건당 2점)</li> <li>- 교과·비교과 교육과정 개발, 각종 진단평가 및 컨설팅 등 참여</li> <li>* 대학 대상 실적에 한하고, 최대 10건까지 제출 가능</li> <li>* 경력증명서, 공문 상에 명시된 것만 인정(인쇄책자 불인정)</li> </ul>	20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책사업과제 기획 및 수주(1억원당 0.2점)</li> <li>- 책임자에 한하고,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</li> <li>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산하기관 사업 실적만 인정하되, 학술연구비 수주는 불인정</li> <li>- 책임자가 다수인 경우, 아래 반영률에 따름 (2인 70%, 3인 50%, 4인 이상 30%, 10인 이상 불인정)</li> </ul>	10		
	3. 연구실적 【10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논문</li> <li>- 국제전문학술지(편당 6점)</li> <li>- 국내전문학술지(편당 3점)</li> <li>- 국외전문학술지(편당 2점)</li> </ul>	10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저서</li> <li>- 전문학술저서(편당 4점)</li> <li>- 일반전공저서(편당 3점)</li> </ul>					
계		<b>50점</b>			
경력 심사 II	4. 자기기술서 【50】	자기소개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자의 성격, 장·단점, 특기, 본교지원동기, 주요 업무 경험등 본인에 대한 소개내용을 상세하게 기록</li> </ul>	면접시 활용	
		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진단, 기획 등 채용분야 주요 추진 실적</li> </ul>	25	
		채용분야 활동계획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용 후 채용분야 활동 계획</li> </ul>	25	
	계		<b>50점</b>		
소계		<b>100점</b>			
면접 심사	1. 면접 【100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수로서의 자질 등 (교수로서의 자질, 인성 적합여부 평가)</li> </ul>	30	100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채용분야 주요추진실적 (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로서 적합여부 평가)</li> </ul>	30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채용분야 활동계획 (임용 후 활동에 대한 비전과 소신 등 평가)</li> </ul>	40		
소계		<b>100점</b>			
합계		<b>200점</b>			

## ■ 제출서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### 1. 기업규모 및 공공법인에 대한 정의

#### 가. 기업규모

구분 규모별	매출액	자본금	종업원
소기업	300억원 미만	80억원 미만	300명 미만
중기업	300억원 ~ 1500억원 미만	80억원 ~ 1천억원 미만	300명 이상 ~ 1천명 미만
대기업 (공공법인 포함)	1500억원 이상	1천억원 이상	1천명 이상

※ 기업규모 증빙자료 제출(증빙자료 예시: 기업현황 등)

※ 기업규모가 상기 표와 상이할 경우, '서류심사위원회'에서 최종 결정함.

#### 나. 공공법인에 대한 정의

- 공공법인: 산학협력중점교수(전임)의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 중 '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'으로서 '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(2011.9.21.)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' 중 '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'를 뜻함

<별표 3. 공공법인(예시)참조>

<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' 중 '호봉확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'>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
-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개별법(상법·민법제외)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

### 2. 직위(직급)구분

가. 해당 직위(직급)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, 근무연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하위직급의 경력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직위(직급)는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배점 1개만 인정한다.

나. 직위(직급)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'경력심사위원회'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.

### 3. 경력심사 I 의 산학협력실적 및 연구실적별 등급구분 및 평가(점수) 기준

가. 공고일 기준 **최근 5년** 이내의 실적을 기재

1) 산학협력실적물

구분	등급별 연구업적	점수	등급별 연구업적	점수
특허	국제특허	6	국내특허	3
포상	국가기관 포상	5	광역단체 및 지자체 포상	3
국가(공공)기관의 위원회활동	국제기구및기관활동	2	국가단위기관위원회	1
	도단위기관위원회활동	0.5	시군단위기관위원회	0.30

<위원회 활동 실적물 인정기준>

1.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을 가리키며, 일시적 심사나 평가 및 소속기관 내부 위원회 불인정
2. 연임은 1회만 인정

2) 연구실적물

구분	등급별 연구업적	점수	등급별 연구업적	점수
학술지게재논문	국제저명학술지	6	국내전문학술지	3
저서	전문학술저서	4	일반전공저서	3

<실적물 인정기준 및 연구자 수 반영률>

1. 국제저명학술지: SCI, A&HCI, SSCI, SCIE, Index Medicus 등재된 학술지
2. 국내전문학술지: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 학술지
3. 전문학술저서: 전공분야에 대한 학술서를 말하며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
 가.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저술된 도서로서 ISBN에 등록된 저서  
 나. 대학 이상의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재, 학술연구 및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도서로서 **경력심사위원회**에서 인정하는 저서
4. 일반전공저서: 전공과 관련된 도서로서 ISBN에 등록되어야 하며, **경력심사위원회**에서 인정하는 저서
5. 연구자수 반영률: 국립강릉원주대학교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제2항 제5호 적용

4. 동일한 연구실적에 대하여 중복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 중에서 최고 점수만 인정한다.
5. 상기이외 기타사항은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, 동 규정 시행세칙,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」 등을 적용하되, 동 규정 및 세칙에 없는 사항은 '경력심사위원회'에서 인정하는 바를 따른다.
6. 공통사항: 미기재 및 관계증빙자료 없을 시,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
**'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(2011.9.21)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' 중  
'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'**

1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(예시)
  - 시장형 공기업
    -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부산항만공사, 인천항만공사
  - 준시장형 공기업
    - 한국조폐공사, 한국관광공사, 한국방송광고공사, 한국마사회, 한국광물자원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산재의료원, 한국주택토지공사,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한국감정원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
2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(예시)
  -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
    - 기술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예금보험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수출보험공사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한국자산관리공사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
  -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
    -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한국연구재단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대한지적공사, 한국콘텐츠진흥원, 국제방송교류재단, 농수산물유통공사, 축산물등급판정소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석유관리원, 한국광해관리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에너지관리공단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산업단지공단,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, 한국원자력문화재단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우편물류지원단,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, 한국우편사업지원단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전파진흥원, 한국정보화진흥원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환경자원공사, 환경관리공단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, 교통안전공단,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,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철도시설공단, 선박안전기술공단, 한국해양수산연수원, 독립기념관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, 한국청소년상담원, 한국청소년수련원, 한국소비자원, 도로교통공단, 한국소방산업기술원, 한국거래소

### 3.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예시)

#### ○ 지방공사의료원

- 서울강남병원, 부산, 대구, 인천, 수원, 의정부, 금촌, 포천, 이천, 안성, 춘천, 원주, 강릉, 속초, 삼척, 영월, 청주, 충주, 천안, 공주, 서산, 홍성, 군산, 남원, 목포, 순천, 강진, 포항, 김천, 안동, 울진, 마산, 진주, 제주, 서귀포

#### ○ 지방공사

- 도시개발공사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), 지방개발공사(강원, 전북, 경북, 경남, 제주도, 마포, 송파), 지방공사(경기), 지하철 공사(서울, 대구, 인천, 광주)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(서울, 구리), 금강도선공사(군산), 도시철도공사(서울), 경기평택항만공사,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, 구미원예수출공사

#### ○ 지방공단

- 시설관리공단, 주차장관리공단(부산, 인천, 춘천, 울산), 체육시설관리공단(광주), 창원시경륜공단

#### ○ 민관공동출자법인

- 장흥표고유통공사, 지방공사인천터미널(인천), 김제개발공사(김제), 구)광주교통관리공사, 문경도시개발공사(문경),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(대전), 구)경강종합관광공사(춘천), 안성축산진흥공사,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, 태백관광개발공사, 청도지역개발공사, 하남시도시개발공사

### 4. 개별법(상법·민법 제외)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

#### 1)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

##### ○ 연구기관 : 국방과학연구소, 한국국방연구원

##### ○ 재단: 구)대전엑스포기념재단, 한국사학진흥재단, 한국국제교류재단, 재외동포재단

##### ○ 조합

- 건설공제조합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중소기업협동조합, 구)축산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구)인삼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엽연초생산협동조합, 경남낙농협동조합

##### ○ 구)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)정부투자기관(예시)

구)대한광업진흥공사, 구)한국농어촌공사

##### ○ 기타

-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, 대한적십자사, 상공회의소, 서울대학병원, 구)신용관리기금, 전쟁기념사업회, 한국국제협력단, 한국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구)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, 구)상호신용금고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,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, 한국방송공사

- 2) 육성법·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    - 한국과학기술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구)한국인삼연초연구소, 광주과학기술원
  -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    - 산업기술연구조합, 한국학중앙연구원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구)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,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,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
  - 촉진법·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    - 구)농지개량조합, 대한체육회, 지방문화원
  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    - 한국개발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국토연구원, 과학기술정책연구원, 통일연구원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법제연구원,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한국교육개발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, 한국천문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한국해양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  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
- 3)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
- 구)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, 구)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, 구)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,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, 구)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,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,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,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,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,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,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,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·화약안전기술협회,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,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,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,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

<별지 제1호 서식>

## 자 기 소 개 서

채용분야		성명	(인)
------	--	----	-----

※ 자기소개서(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)

※ A4용지 2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되, 글자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 줄간격은 160%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채용분야 주요 추진실적

채용분야		성명	(인)
<p>※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율적으로 작성</p>			

※ 분야별로 A4용지 3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되, 실적위주로 작성하고,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글자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, 줄간격은 160%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 채용분야 활동계획

채용분야		성명	(인)
<p>※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율적으로 작성</p>			

※ 분야별로 A4용지 3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작성(도표, 그림 등 가능)하되, 글자는 휴먼명조체 12포인트, 줄간격은 160%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